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58 발의연월일: 2020. 12. 7.

발 의 자: 임호선·홍익표·문진석

이규민 · 신정훈 · 김민철

홍성국 • 홍기원 • 강준현

소병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능연속성계획(COOP)은 공공기관이 직면할 수 있는 광범위한 위기상황에서 기관의 핵심기능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수립·운영하는 계획을 의미하며,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의무적으로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난 2017년 1월, 행정안전부가 법적 근거를마련함.

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3년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기능연속성계획수립 의무기관인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48개 중앙부처, 245개 지자체, 89개 공공기관 등 총 382개 기관 모두가 이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헌법기관인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규정도 없는 상황임.

또한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됨에 따라 물류센터, 은행, 통신 등의 국

민 생활과 직결되는 영역의 업무가 마비, 지연되고 있어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, 민간 기관 및 단체에게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어 법률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따라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재난관리책임기관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각 기관 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며,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도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해 필요한 기관 및 민간업체도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핵심기능이 멈추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25조의2).

법률 제 호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의2제5항 중 "재난관리책임기관"을 "재난관리책임기관(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하며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제7항) 중 "대통령령"을 "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 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"으로 한다.

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(민간단체를 포함한다) 및 민간업체는 기능연속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 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	제25조의2(재난관리책임기관의
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~	장의 재난예방조치 등) ① ~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
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	⑤ <u>재난관리책임기관(국회·법</u>
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	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
심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	리위원회를 포함한다. 이하 이
계획(이하 "기능연속성계획"이	조에서 같다)
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	
다.	
<u><신 설></u>	⑥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의
	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를 위하여
	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
	고시하는 기관·단체(민간단체를
	포함한다) 및 민간업체는 기능
	연속성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
	한다. 이 경우 민간단체 및 민
	간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
	및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.
<u>⑥</u> (생 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⑦ 기능연속성계획에 포함되어	<u>8</u>
야 할 사항 및 계획수립의 절	
차 등은 <u>대통령령</u> 으로 정한다.	국회규칙, 대법원규칙,
	헌법재판소규칙, 중앙선거관리

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-----.